

KiRi 세미나 | 금융정책포럼

IFRS 17 시행과 계약자배당 제도 개선방안

노 건 엽(보험연구원 연구위원/자본규제연구센터장)

2022.11.24.(목)

목 차

I. 개요

II. 제도 현황

III. 해외 제도

IV. 개선 방안

〈붙임〉 계약자 배당제도 연혁

〈참고문헌〉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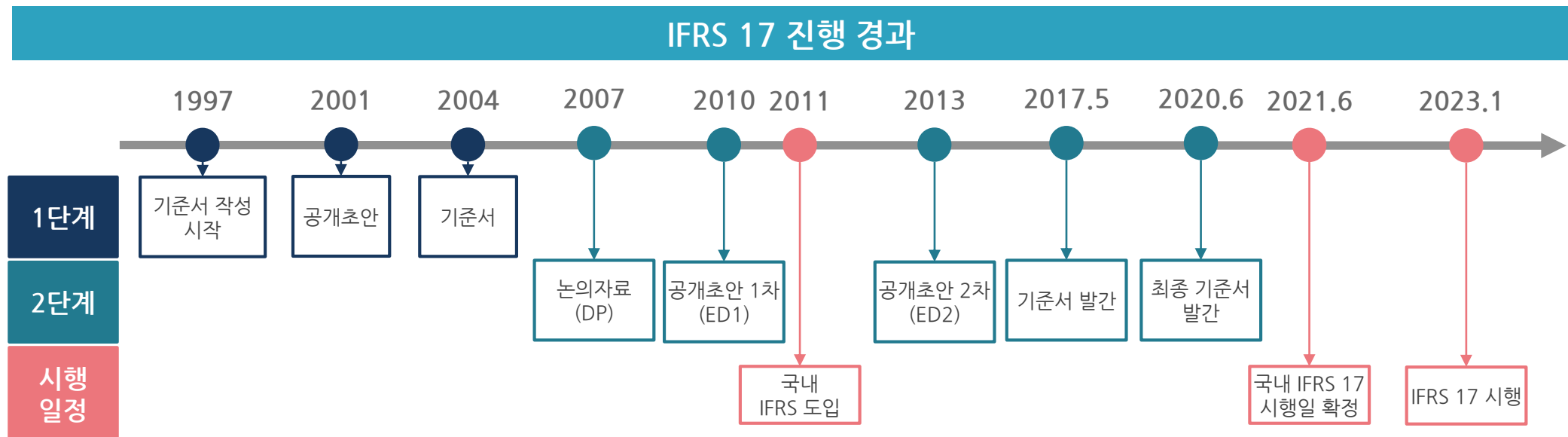
개요

검토 배경

-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가 내년부터 시행됨
- 최근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한 감독회계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계약자배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이 2022년 1월12일 및 2022년 11월 17일에 사전예고됨
- 계약자배당 제도는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 중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임
- 20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유배당보험에 대한 시가평가를 통해 이차역마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동안 유배당보험은 이차부문의 손실로 인해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향후 유배당보험에서 투자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약자배당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음

IFRS 17 도입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은 1997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여년 이상 진행된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2020.6월 IFRS 17 최종 기준서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1.6월에 IFRS 17 시행일(2023.1.1)을 확정함
- IFRS17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수익 인식방법”에서 현행(IFRS4)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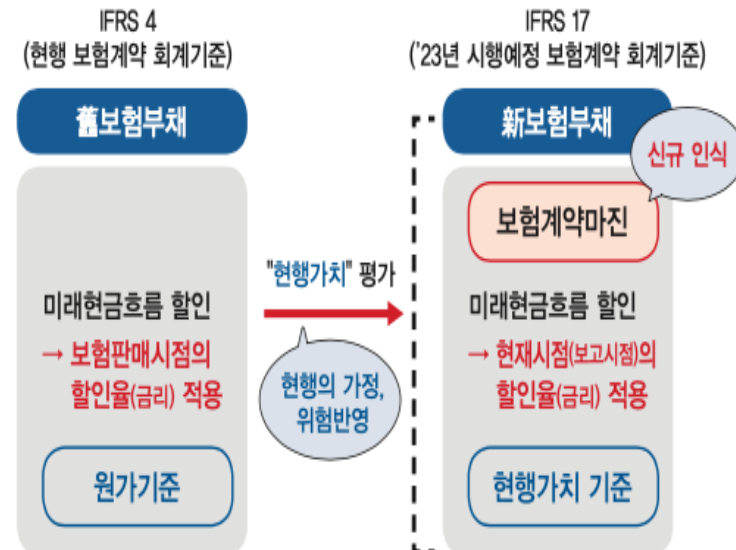
보험부채 평가

-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됨
 - IFRS17은 평가시점 가정 (실제 위험율, 시장이자율)을 재산출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의 기대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부채에 별도 표시함
 - 평가시점마다 가정이 변경되므로 부채의 변동성이 증가함

보험부채 (IFRS 17)

미래현금흐름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 순유출액 (현금유출 - 현금유입) • 현금유출 : 보험금, 사업비 등 • 현금유입 : 보험료
할인율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이익의 현재가치 (현금유입 - 현금유출 - 위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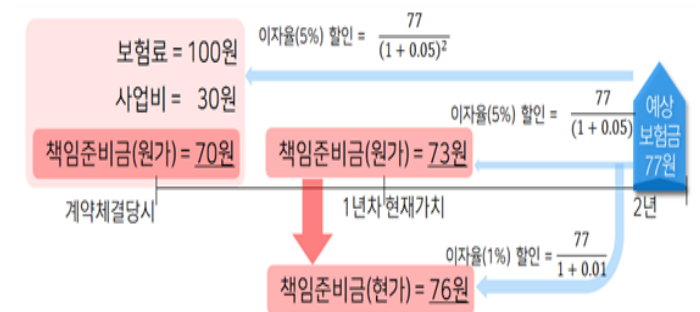
IFRS 4와 IFRS 17 부채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21.12),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이자율 변경 예시

- ① 보험기간 2년, ② 2년 말 예상 지급보험금 77원,
- ③ 계약당시 이자율 5% → 1년 후 이자율 1%로 하락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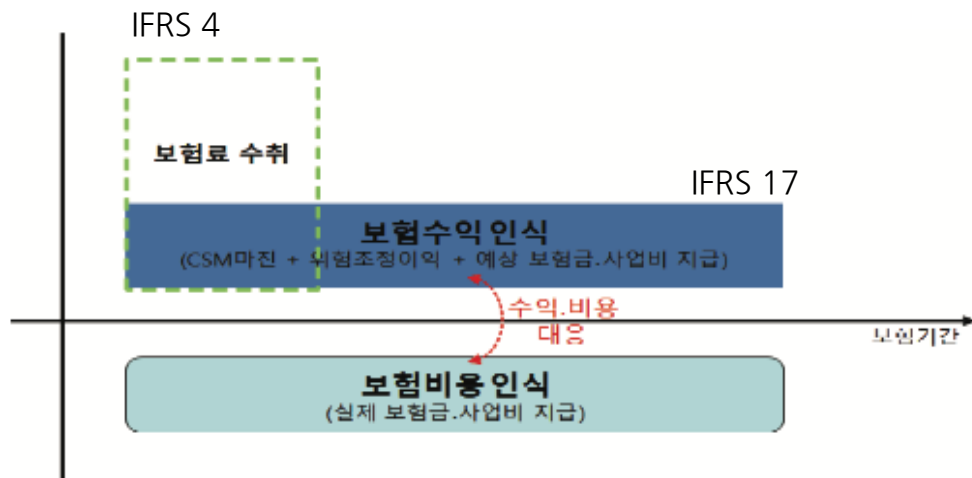
⇒ 보험부채 추가적립 필요: 73원 → 76원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2. 24),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수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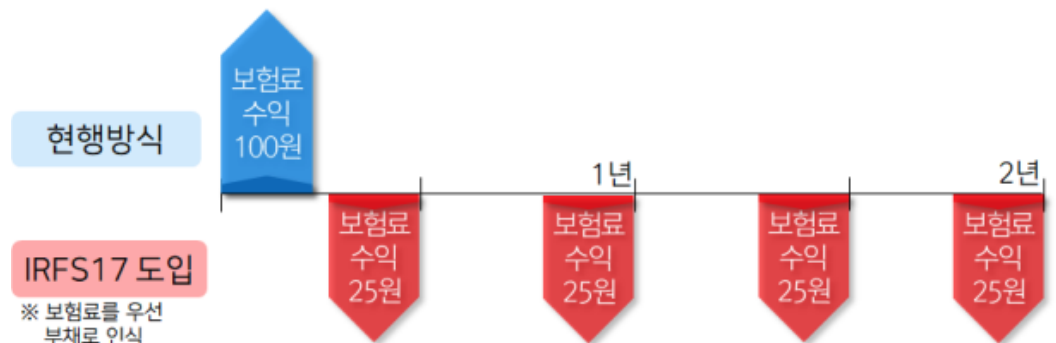
- 보험수익 인식 방법이 “현금주의” 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
 - IFRS17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보험금, 사업비)에 대응되는 예상 보험금, 예상 사업비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등이 보험수익으로 인식됨
 - 예정 대비 실제 차이가 손익으로 표시되므로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이 중요함

IFRS 4와 IFRS 17 수익인식 비교



수익인식 예시

①보험기간 2년, ②일시납 보험료 100원인 보험상품을 가정



손익계산서 비교

- **현행 준비금 전입액 중 부채이자비용이 투자비용으로 분류되어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의 구분이 명확해짐**
 - 투자비용 증가로 인해 투자이익이 현행보다 감소할 수 있음

현행	
I. 보험관련수익	500
1. 보험료수익	500
II. 보험관련비용	410
1. 지급보험금	300
- 사고보험금	100
- 중도급부금	200
2. 직접유지비	5
3. 신계약비 상각	40
4. 준비금 전입액*	65
III. 보험관련이익	90
IV. 투자이익	20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5
V. 영업이익	110

IFRS 17	
I. 보험수익	200
1. 예상 사고보험금, 예상 직접유지비	105
2. 예상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	80
II. 보험비용	120
1. 실제 사고보험금, 실제 직접유지비	105
2. 실제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간접사업비	0
III. 보험이익	80
IV. 투자이익	5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부채이자비용 포함)	20
V. 영업이익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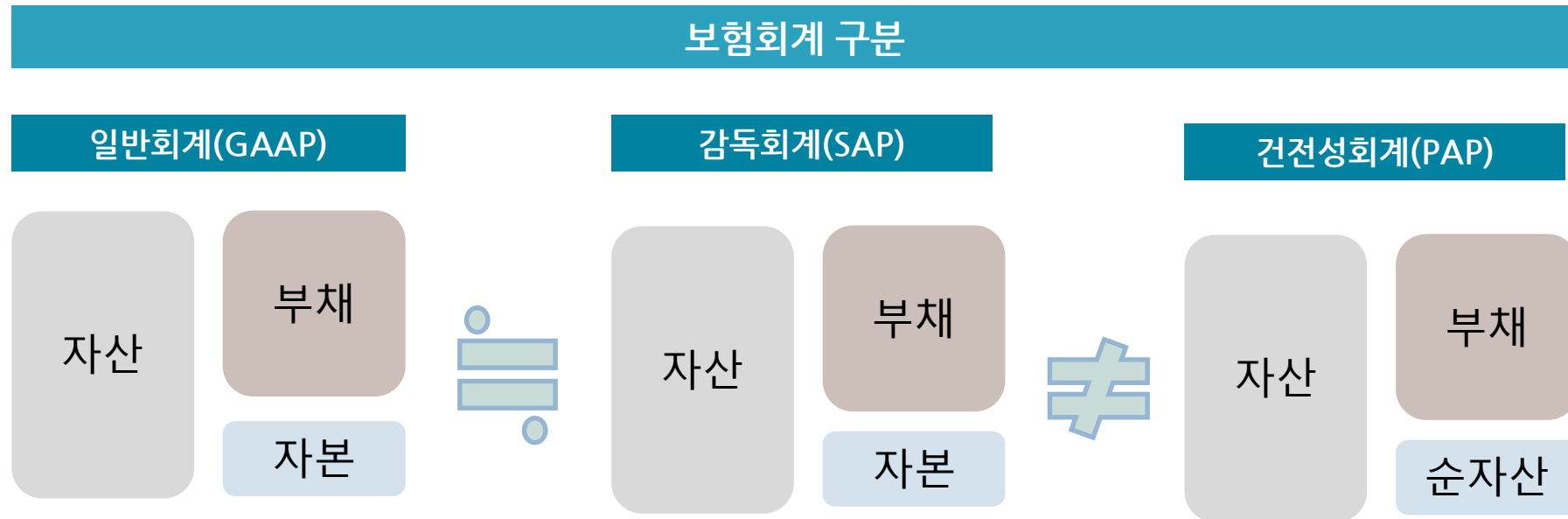
* 준비금 증감(50) + 부채이자비용(15)

II

제도 현황 및 이슈사항

보험회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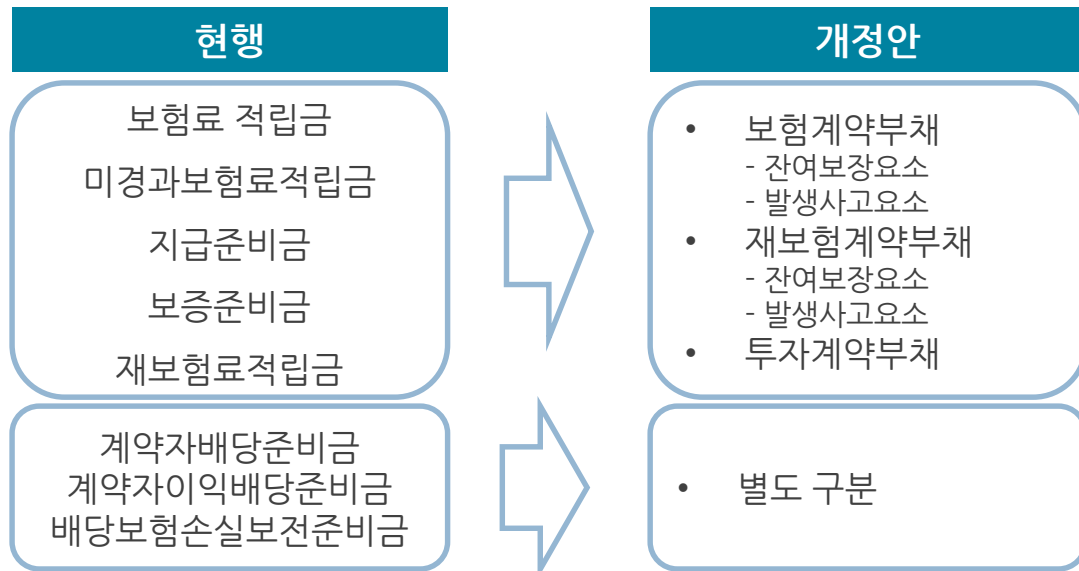
- 감독회계(SAP)에서 “책임준비금 평가”, “계약자배당”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 일반회계는 IFRS17이 되며, 감독회계는 IFRS 17 기반의 감독목적 회계임
 - 계약자보호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등 감독목적 정보제공을 위해 감독회계가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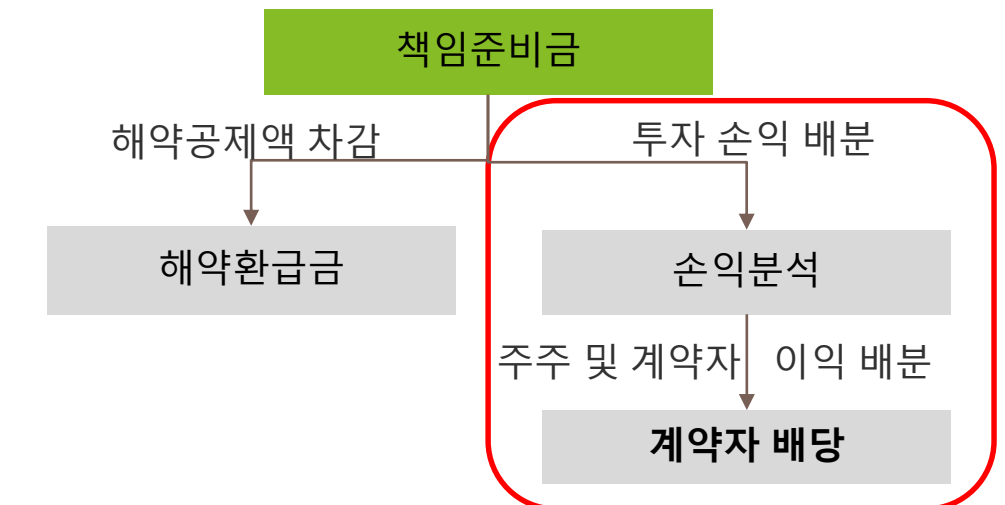
책임준비금 제도

- IFRS17에서 계약자배당은 미래 현금흐름에 포함하고 별도 표시하지 않아 감독회계에서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을 정보성 계정으로 별도로 구분함
-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 손익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계약자 배당도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음
 -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현행 제도를 유지함

책임준비금 구성



책임준비금과 계리제도간 관계



손익분석 제도

- 손익분석은 보험회사 경영성과인 잉여금 변동내역을 분석하여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 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책임준비금 해당손익(유배당 보험손익, 무배당 보험손익, 투자손익)으로 구분함
 - 보험손익은 보험상품별로 산출하며 세분화된 계산과정을 통해 산출됨
- 투자손익 배분시 평균책임준비금 방식 적용으로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상품별로 배분됨
 - 유/무배당 상품의 자산이 별도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고 운용되어 투자손익 배분이 필요함

보험부문 손익

-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 증가액 + 해지당시 기준 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 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 관련항목

투자부문 손익

- 책임준비금 해당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자본계정운용손익 - 책임준비금 이자

투자손익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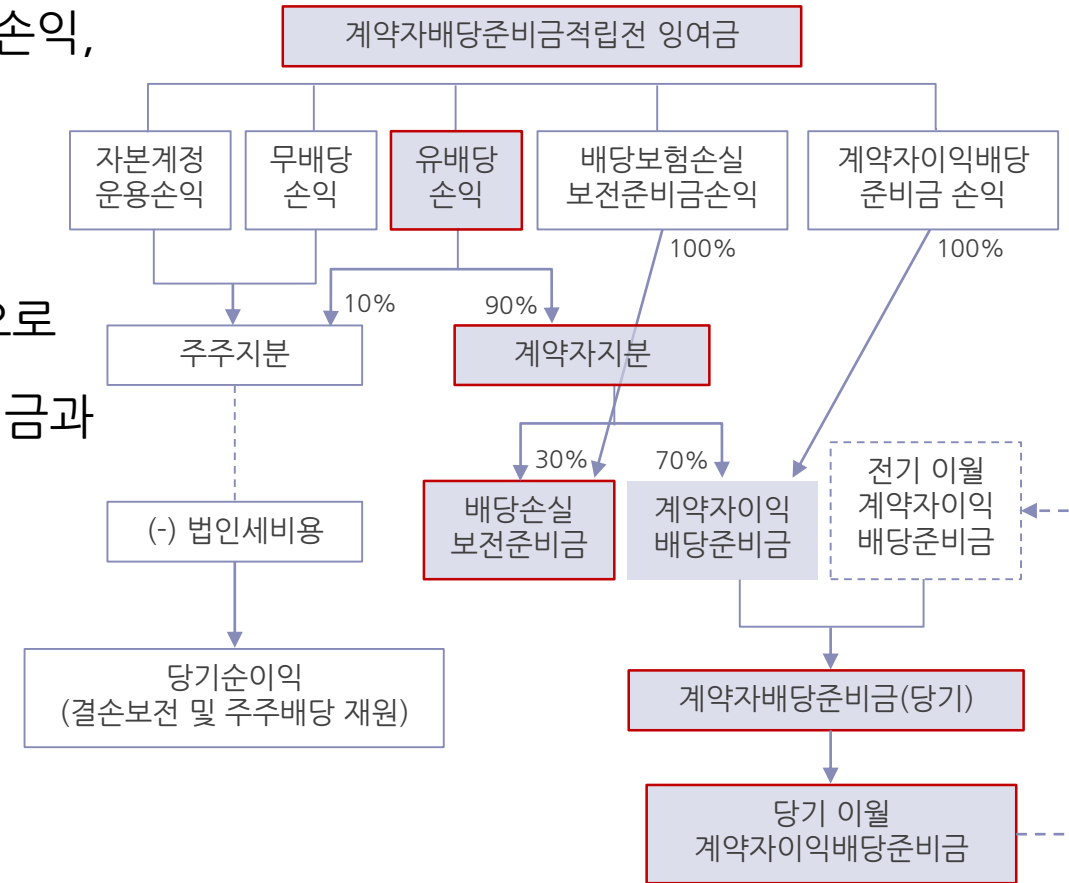
-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잔여액
× [(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
/ 평균책임준비금*]

* 평균책임준비금 = (기초 투자손익관련 책임준비금 + 기말 투자손익관련 책임준비금) / (2 + 평균적립이율)

계약자 배당 제도

· 현행 원가평가 보험부채 기반으로 산출된 손익을 기준으로 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함

-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 잉여금'을 유·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등으로 구분
- 유배당 보험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함
- 산출된 계약자지분의 30% 이내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나머지 70%는 전기 이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합산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구성함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에 사용함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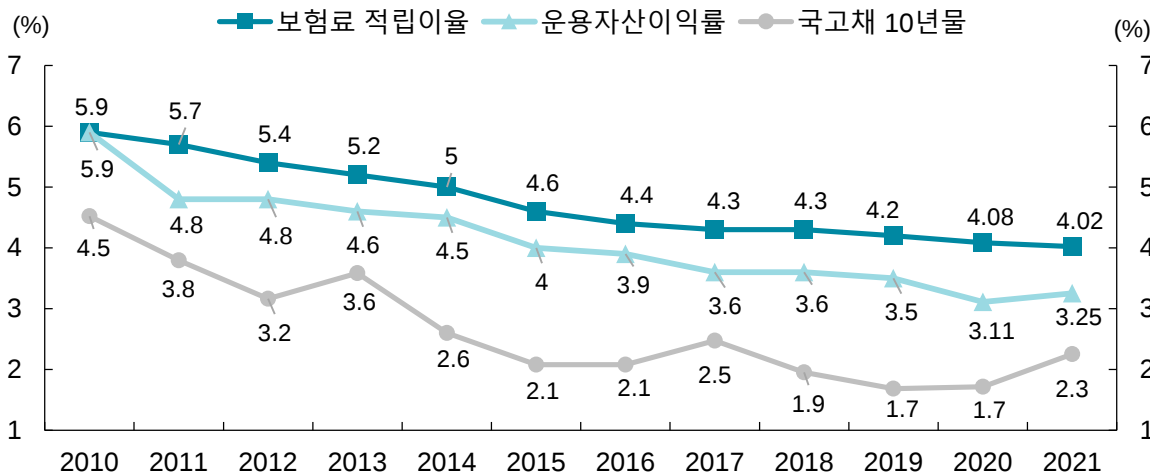


자료: 오창수, 김경희(2020), "IFRS17 도입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 운영방안", 계리학연구

계약자 배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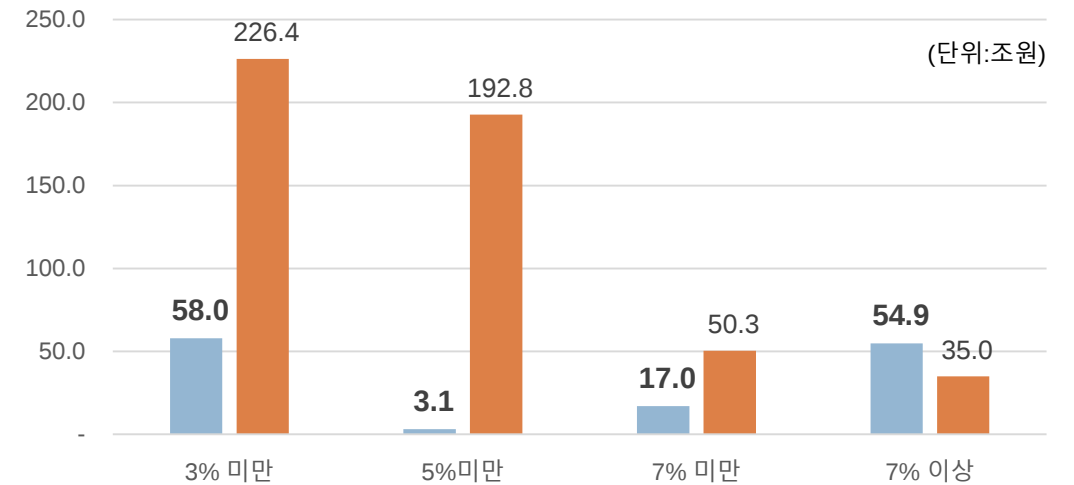
- 생보의 경우 보험료 적립이율보다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은 이차역마진 상태임
- 생보 유배당 상품은 7% 이상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고금리 유배당 계약에서는 배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적립이율을 초과한 경우 투자이익에 대한 배당이 발생할 수 있음

생보 적립이율 및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금융통계월보

생보 적립이율별 유/무배당 보험료적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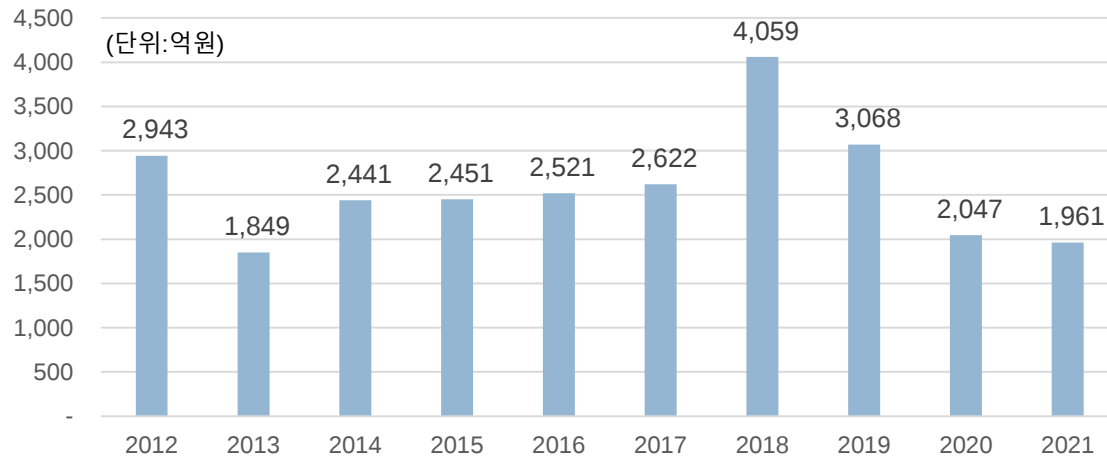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2021년말)

계약자 배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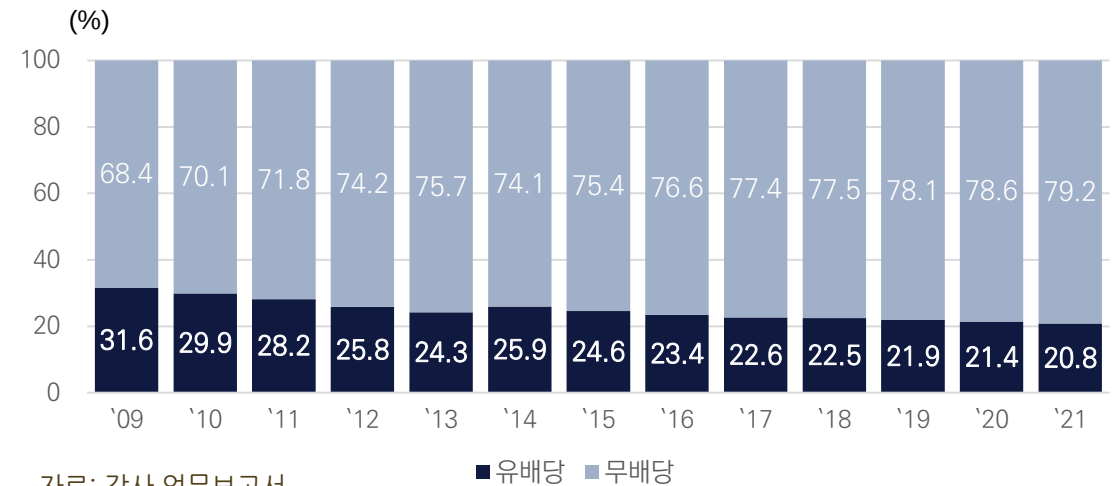
- 유배당 연금저축보험(특별계정)에서 대부분의 배당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배당금은 1,961억원임
- 생보 보험료 적립금 중 유배당 보험의 비중은 2021년말 기준 20.8%로 매년 감소 중임
 - 1992년 무배당 상품 최초 도입 이후 현재는 연금저축보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신규 판매가 거의 없어 유배당 상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됨

생보 배당금 지급 현황



자료: 2022 생명보험 FACT BOOK

생보 보험료적립금 중 유배당 보험 비중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이슈사항

- 제도 변화로 인해 배당이 발생하지 않은 유배당 상품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채이자비용으로 적립이율이 아닌 무위험이자율(3% 수준)이 적용되어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함
 - 고금리 유배당 상품의 책임준비금 비중 증가(20% 이상) 로 인해 유배당 보험부채에 대한 투자손익 배분금액이 현재보다 증가함

(의견 1)

- 회계상 제도 변화로 인해 배당금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VS.

(의견 2)

- 손익 인식기준 변화로 인해 배당금이 발생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이슈사항

· 계약자 배당의 원칙

- 공평성 : 배당금액의 결정이 계약자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
- 탄력성 : 잉여금의 배분이 경영실적, 사회경제의 환경 등을 반영한 것이어야함
- 간면성 : 공평성과 탄력성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대중의 이해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배당방식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계되어야 함
- 계속성 : 계약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배당방법을 변경해서는 안됨

· 계약자 배당 원칙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 부여, 적절한 보험수리 및 회계관행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III

해외 제도

캐나다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단일화되어 있으며 IFRS17 시행예정임
- 현행 책임준비금은 시가방식으로 평가함
 - CALM(Canadian Asset-liability Method)라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함
- 계약자 배당에 대해 금융감독청(OSFI)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유배당 상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타 계정으로 자금이체는 제한됨
 - 보험회사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방법을 개발해야 함
- 보험회사는 기여도 원칙을 반영한 다양한 배당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여도 원칙은 계약자배당시 배당가능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이 공헌한 기여도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함
-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지나친 변동을 막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수익률과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제기초율을 매년 변동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평활화 방안을 적용함

호주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단일화되어 있으며 IFRS17 시행예정임
- 현행 책임준비금은 시가방식으로 평가함
 - MoS(Margin On Services) 라는 방식이며 IFRS17 의 보험계약마진(CSM)과 유사한 이익인식기준 (Profit Carrier)을 적용하여 이익인식함
- 생명보험법에 따라 영업이익을 유배당과 무배당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호주 유배당 계약자보유이익/ 호주 유배당 주주보유이익/ 해외 유배당 계약자이익/ 무배당 주주이익
- 유배당 계약에서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인정하여 계약자와 주주가 공동으로 부담함
 - 유배당 계약은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계약자 보유이익으로 할당함
 - 손실 발생시 영업손실의 80% 이하를 계약자보유이익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주주이익에 할당(-)함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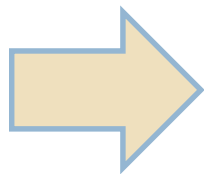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LDTI 시행 예정임
 - 현행 일반회계는 순보험료식 평가방식이나 2023년 이후 IFRS 17과 유사한 시가방식(LDTI)으로 변경될 예정임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재량에 따라 계약자 배당 사항이 정해지나 주(state)에 따라 법에서 정하기도 함
 - 대부분 주에서 유배당보험의 배당가능 잉여금은 감독회계를 기준으로 함
- 뉴욕주 보험법은 잉여금에 대한 계약자 배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주의 경우 배당 이익의 10%와 가입금액 1,000달러당 50센트 중 큰 값을 최고 한도로 함
- 캐나다와 유사하게 기여도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자 배당을 함

일본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단일화되어 있으며 상호회사가 대부분임
- 책임준비금은 현행 국내 방식과 동일한 원가 방식(순보험료 방식)으로 평가함
- 보험업법에서 계약자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유배당보험은 3이원 배당과 이차배당 방식으로 구분되며 배당주기가 상품에 따라 다양함
 - 3이원 방식은 매년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보험회사는 3년 배당하는 상품을 판매함
 - 이차배당방식은 주로 5년단위로 손익을 합산하여 잉여금 발생시 배당하며 일부 보험회사는 3년 또는 1년 단위 상품을 판매함

소결

- 계약자 배당 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법규로 규정화하여 일정 기준을 제시함
 -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거나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해외 제도는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의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 계정 구분, 계약자이익과 주주이익 분리 등
-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배당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기여도 원칙, 평활화, 유배당 계약의 손실인정 등



· 해외는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 계정 구분으로 인해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더라도 손익 배분에 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음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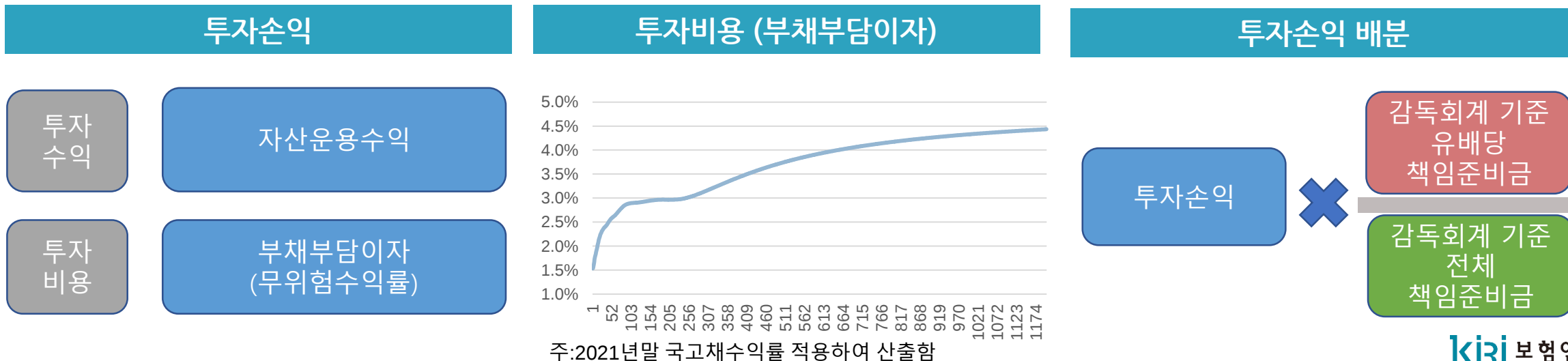
개선방안

개선방안

- 감독회계에서 계약자배당제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감독당국 주관의 TF가 진행 중임
 - 금융감독원, 생손보 각 4개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참여중임
 -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위험률차 및 사업비차 배당과 관련된 보험손익은 감독회계 재무제표 손익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별도 배분 기준 마련이 불필요함
- 이에 따라 이자율차 배당과 관련된 투자손익 배분기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투자손익은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개선방안으로 감독회계의 투자손익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투자비용 및 책임준비금을 일부 조정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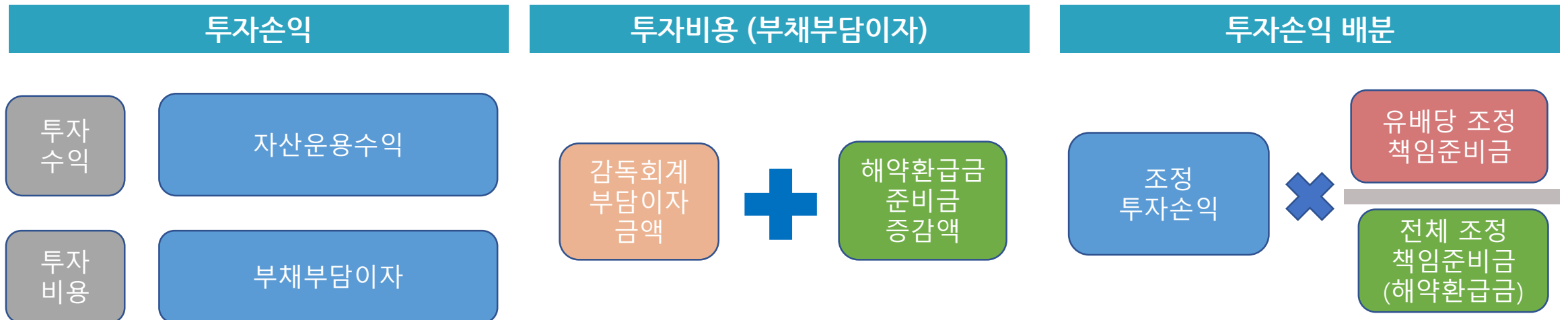
(1안) 감독회계 손익 기준

- (방안) 감독회계 손익계산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투자손익을 산출함
 - 투자비용인 부채부담이자(감독회계 할인율인 평가시점 무위험수익률(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 투자 손익은 감독회계 기준 책임준비금 비중으로 배분함
- (특징) 평가시점 할인율보다 높은 적립이율을 가진 유배당 계약은 책임준비금이 증가하므로, 현재보다 투자손익이 좀 더 많이 배분 될 수 있음
 - 이후 가정 변화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 손익 배분의 변동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계약자의 기여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2안) 감독회계 조정 손익기준

- (방안) 투자비용인 부채부담이자를 별도로 산출하고 투자손익 배분 기준을 조정함
 - 부채부담이자는 감독회계 기준 부담이자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감액을 가산한 값을 적용 (적립이율과 유사한 수준)
 - 투자손익은 해약환급금에 기반한 조정 책임준비금 비중으로 배분함
- (특징) 조정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 기준이므로 현행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손익이 배분됨
 - 감독회계 재무제표와 다른 투자비용과 책임준비금을 산출해야 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함



각 안별 비교

구분	(1안)	(2안)
보험손익	감독회계 재무제표 적용	좌동
투자수익	감독회계 재무제표 적용	좌동
투자비용	감독회계 재무제표 적용	일부 조정(적립이율과 유사)
투자손익 배분	감독회계 기준 책임준비금	일부 조정(해약환급금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준비금)
장점	- IFRS17 제도와 일관성 유지 - 외부 검증을 통한 정합성 확보 가능	- 현행 제도와 일관성 유지 - 배당금액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단점	- 배당금액 변동성 증가로 인해 당기손익 급변 - 계약자의 기여도와 다르게 배분될 가능성	- 감독회계 손익과 차이 발생 - 별도 기준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비용 발생

< 붙임 > 계약자 배당 제도 연혁

- 국내 계약자배당제도는 1965년 특별배당제도 실시한 이후 위험률차 배당(1984년), 이자율차 배당(1988년), 사업비차 배당(2001년)이 순차적으로 도입됨
- 무배당보험은 1992년 도입으로 이전에는 유배당보험만 판매되었음

연도	제 도
1965~1972	· 특별배당제도 실시 (보험 예정이율과 은행 예금금리 간 차이를 보상)
1979	· 확정배당 도입 · 보험예정이율과 은행 정기예금이율 차이를 배당금으로 지급 · 1993년 금리차보장금으로 용어 변경되었으며 1997년 이차배당으로 흡수됨
1984	· 위험률차배당 도입
1985~1986	· 정산배당 시행 (생명표 변경[조정국민생명표 → 간이경험생명표]으로 인한 차이 정산)
1988	·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도입
1992	· 무배당보험 도입
2001	· 사업비차배당 도입 · 3이원(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별 배당제도 완료

< 참고문헌 >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21.12),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2.24),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 김성재(1989), “계약자배당의 이론적 고찰”, 보험학회지
- 구본성(1998),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와 계약자배당제도”, 한국금융연구원
-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2022),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 오창수·김경희(2020), “IFRS17 도입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 운영방안”, 계리학연구
- 생명보험협회(2022), “2022 생명보험 FACT BOOK”

감사합니다.

